

## 거래처 행동 지침

### I. 본 지침의 목적과 요청사항

SEVEN&i 그룹은 창업 이래 “사훈”으로 내건 “고객, 거래처, 주주, 지역사회, 사원” 등 기업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성실한 기업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모든 직원이 “SEVEN&i 그룹 기업 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거래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법령 준수, 환경 보전, 노동 조건에 대한 배려 등에도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사회적 책임으로써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는 “SEVEN&i HLDGS. 거래처 행동 지침(이하 본 지침)”을 2007년에 책정하여 2017년에 개정했습니다. 당사는 당사 그룹 각 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처분들이 본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함에 따라, 법령 위반 등에 의한 사업 정지 리스크의 저감과 그러한 발단으로 발생하는 불매운동의 회피 등 거래처 및 당사 그룹 각 사 쌍방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안전과 품질 유지 및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접 관련된 거래처뿐만 아니라 거래처분들이 당사 그룹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원재료를 조달하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당사 그룹의 자세 및 본 지침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공헌하며, 사회의 공존, 공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신념 하에서 거래처분들이 자사 및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본 지침이 준수되도록 체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거래처분들께 한층 더 높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이사카 류이치  
SEVEN&i HLDGS. Co., Ltd.  
대표이사 사장

## II. SEVEN&i 그룹 거래처 행동 지침

SEVEN&i 그룹은 거래처에 대해, 거래처가 SEVEN&i 그룹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조달하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이해 및 주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일시 정지 또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법령 준수

1. 각국,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관련 국제 규칙 및 그러한 정신을 준수한다.
2. 법령 준수를 위한 방침의 책정, 체제의 구축, 교육의 실시, 내부 통보제도 등을 정비한다.

### 2. 인권의 존중

기업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 개인의 존엄을 존중한다.

1. 다양한 인재가 각각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장 환경 만들기에 노력한다.
2. 현지 법령 및 ILO 에서 정해진 조약을 위반하는 아동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취업은 직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근거하며, 강제적인 노동이 행해지지 않는다. 부당하게 직원의 신분증명서를 보관하거나 예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채용, 급여, 승진, 이동, 연수 및 해고, 퇴직에 있어서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 성적체감\*, 노동조합 또는 정치적 활동 등에 근거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 균등을 도모한다.
5. 체벌, 육체적, 정신적, 성적 괴롭힘이 행해지지 않는다.

\* 성적지향: 어떠한 성별을 연애나 성애의 대상으로 하는가를 말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 지향

\* 성적체감: 자신이 어느 성별에 속하는가를 말하는 인식이나 감각

### 3. 고용 및 직장 환경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고용되며, 안전과 건강을 배려하여 위생적이고 기능적인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제공한다.

1.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지역 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노동 계약서를 체결한다.
2. 현지 법령에 정해진 노동시간을 준수한다. 또한 휴식, 휴일은 현지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운용한다.
3. 현지 법령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법정, 또는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4. 잔업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한다.
5. 어린 직원을 야간 및 위험한 환경 하에서 근무시키지 않는다.
6. 직장의 건축물은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하며, 현지 건축 기준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고 적절하게 점검을 받아 검사에 합격한 것을 확인한다.
7. 직장 내에 비상구 및 대피로, 표식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8. 직원에게 위생적인 화장실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근무시간 중의 이용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

9. 직원에게 안전한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 안내 및 훈련 등을 제공한다.
10.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11. 복리후생에 관련된 법 규제를 준수하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우를 정비하는 데 노력한다.
12. 직원과 직접 또는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대화, 협의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직원의 권리를 존중한다.

#### 4. 지구 환경의 보전

---

원재료의 조달, 제조, 제공 등 모든 장면에서 지구 환경을 배려한 사업을 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공헌한다.

1. 적용 받는 환경 관련 법 규제 및 국제 조약을 준수한다.
2. 국제 조약 또는 법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화학물질 및 SEVEN&i 그룹 각 사업회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폐기물, 배기, 배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한다.
3.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노력한다.
4. 기후변화 완화책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을 도모한다.
5.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생산 환경을 배려한 지속 가능한 원재료의 조달에 노력한다.
6.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에 노력한다.

#### 5. 지역사회, 국제사회와의 관계

---

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지역의 문화, 습관 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노력한다.

1.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파악하고 협력, 연계하여 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제 해결에 공헌한다.
2.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 기업, 단체, 총회꾼, 사회운동 및 정치활동 표방꾼, 특수 지능 폭력 집단, 기타 반사회적 세력과는 일절 연관을 갖지 않는다.

#### 6. 정보 관리

---

거래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는 적절히 관리한다.

1. 거래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한다.
2. 정보의 사용은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이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 7. 상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SEVEN&i 그룹 각 사업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품질 기준 및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산국 및 판매국 쌍방에서 정해진 법 규제를 준수한다.
2.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쾌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한다.
3. 고객(최종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쾌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최우선으로 불이익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4. 인권, 환경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재료의 사용에 의한 지역사회로의 영향을 고려한 조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 8. 공정한 거래

---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경쟁 및 적절한 거래를 실시할 것. 또한 정치단체, 행정기관과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고,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령과 사내 규칙을 준수한다.
2. 거래에 있어서는 건전한 상습관에 따른 적절한 조건 하에 거래하며, 사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는다.
3. 정치헌금이나 국내 공무원, 외국인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선물, 접대, 금전적 이익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정치단체나 행정기관과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9. 지적 재산의 보호

---

1. 자사가 보유하거나 자사에 귀속된 지적 재산권 등이 제삼자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2. 제삼자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기밀 등 지적 재산의 부정 입수나 부정 사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 서적의 부정복사 등 권리의 침해를 일절 하지 않는다.

## 10. 수출입 거래 관리

---

1.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수출입에 관한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제품이나 원재료와 관한 자금, 물자의 제공, 또는 노동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대해 국제 경제제재나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 단체, 개인과는 일절 관계를 갖지 않는다.

## 11. 공급망으로의 전개

---

거래처의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본 지침의 이해, 침투에 노력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후속조치와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다.

## 12. 모니터링

---

본 지침의 실현화에 노력한다.

1. 본 지침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협력한다.
2. 본 지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실시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히 보관한다.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3. 본 지침에 대해 준수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에 노력한다.

## III. 본 지침의 취급

본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일시 정지 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SEVEN&i 그룹에서는 본 지침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함을 통해 거래처분들과 SEVEN&i 그룹 쌍방의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3월 제정  
2017년 4월 개정